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(약칭: 인체조직안전규칙)



[시행 2022. 7. 12.] [총리령 제1816호, 2022. 7. 12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바이오의약품정책과) 043-719-3304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조직의 분배・이식의 금지 등)**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7호에서 "이 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(이하 "조직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 직
 - 2.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
- 제3조(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되, 그 적합성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 - ② 조직은행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(이하 "수출국 제조원"이라 한다)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.<개정 2017, 12, 8,, 2019, 12, 4.>
 - 1. 수입되는 조직의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정기준에 관한 서류. 이 경우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판정기준의 수준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.
 - 2. 수출국 제조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가 제1호에 따른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③ 삭제<2019. 12. 4.>
 - ④ 조직은행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한다)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직기증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기증일과관련한 조직기증자의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직기증자의 정보 처리 및 제공에 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해당 조직기증자(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 및 유족을 말한다)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12. 4.>
 - ⑤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받은 심사평가원은 해당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병력 또는 투약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, 병력 및 투약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6. 29., 2019. 12. 4.>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는 경우: 그 질환명과 진료일
 - 가.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전염성질환
 - 나.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
 - 다.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질환
 - 라.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
 - 마. 별표 1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투약이력이 있는 경우: 그 의약품의 명칭, 조제연월일 및 총 조제일수
 - 가. 별표 1 제3호에 따른 생백신
 - 나. 별표 1 제6호에 따른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.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
- ⑥ 조직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을 폐기처분하기 전에 다른 조직에의 오염 및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을 냉동고, 냉장고 등의 공간에 격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. 13., 2019. 12. 4.>
- 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 분배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한 경우
- 2.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배·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발견한 경우
- 3. 삭제 < 2019. 12. 4.>
- ⑦ 조직은행은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관하고 있던 분배・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명칭・세부명칭, 폐기량 및 폐기연월일 등의 내용을 기록・보관하여야 한다.
- ⑧ 조직은행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기 1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보고해야 한다.<신설 2019. 12. 4.>
- 제4조(조직은행의 정도관리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으로 하여금 조직품질·조직검 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(이하 "정도관리"라 한다)를 연 1회 이상 받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,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정도관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5조(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)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8., 2021. 9. 10.>
 - 1. 삭제<2017. 12. 8.>
 - 2.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
 - 3. 시설·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증 사본
 - 4.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
 - 5.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
 - 6. 사업운영계획서
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.<개정 2017. 12. 8., 2019. 6. 12., 2019. 12.
 - 4., 2021. 9. 10.>
 - 1.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: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
 - 2.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 - 3.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: 사업자등록증
 -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.<개정 2021. 9. 10.>
 -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5조의2(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) ①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(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10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한다.<개정 2021, 9, 10.>
- ③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.<개정 2021. 9. 10.> [본조신설 2016. 5. 13.]

제6조(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)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8. 6. 29.>

- 1. 조직은행의 명칭
- 2. 조직은행의 대표자
- 3. 조직은행의 소재지
- 4. 조직은행의 장
- 5.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
- 6. 조직은행의 유형
- 7. 조직은행의 업무구분
- 8. 취급 조직의 유형
- ②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8. 6. 29, 2019. 12. 4, 2021. 9. 10.>
-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<개정 2021. 9. 10.>
- **제7조(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)** 법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"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의학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의 분배·이식 금지대상 여부를 판정할 것
 - 2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(이하 "표준작업지침서"로 한다)에 따라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
- 제7조의2(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) 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 3호의2서식의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10.>
 - 1. 조직은행설립허가증
 -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- 가.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
 - 나.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다.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<개정 2021. 9. 10.>
 - 1.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: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
 - 2.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: 등기사항증명서

- 3.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: 사업자등록증
-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은행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6. 12.]

- 제8조(조직은행의 허가갱신)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,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9, 12, 4,>
 -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조직은행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갱신 절차를 알려야 한다.<개정 2021, 9, 10.>
 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,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.
 -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60일을 말한다.<신설 2019. 12. 4.>
- **제9조(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)**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13., 2021. 9. 10.>
 - 1.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배하지 말 것
 - 2.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은 분배하지 말 것
 - 2의2. 제12조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다음 각 목에 따른 자 외에는 분배하지 말 것
 - 가. 조직은행
 - 나. 조직이식의료기관
 - 3. 곤충 등의 침입,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조직은행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 - 4.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할 것
 - 5. 취급 조직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분배 중단, 회수·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
 - 6. 조직의 가공처리방법 및 보관방법의 변경, 조직의 사용기간 연장, 주요 시설·장비의 변경, 채취기관 추가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릴 것
 - 6의2. 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수출·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
 - 7. 별표 3의 조직 관리기준(이하 "조직 관리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조직은행을 운영할 것
- 제10조(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) ① 조직은행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간 역할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을 적출(摘出) 시 혈관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조직은행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조직 채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조직은행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 조직만을 채취할 수 있다.
- **제11조(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)**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직은행 종사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8. 6. 29.>
 - 1. 의료관리자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조직은행의 장,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 중 1명
-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 마다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2조(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)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은 그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함해야 하고, 한번 개봉한 후에는 다시 쉽게 봉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) ① 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"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코드(이하 "표준코드"라 한다)
 - 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코드(이하 "바코드"라 한다)
 - 3. 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
 - 4. 보존용액명
 - 5. 보관온도
 - 6. 방사선 멸균 시 "방사선 멸균"이라는 문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도안(圖案)
 - ②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아 법 제15조의2 각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용기나 포장에는 법 제15조의 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바코드만 적을 수 있다.
 - 1.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에 적고, 해당 용기나 포장에 "기재사항-첨부문서 참 조"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
 - 2. 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둘러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적은 경우
 - ③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적을 수 있다.<개정 2016. 5. 13.>
 - 1. 법 제15조의2제1호에 관한 사항
 - 2. 법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조직의 세부 명칭
 - 3. 법 제15조의2제3호,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
 - 4. 표준코드
 - 5. 바코드
 - 6. 보관온도
- **제14조(첨부문서 기재사항)**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"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8.>
 - 1.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
 - 2. 법 제15조의2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. 다만, 법 제1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"기재사항-용기 또는 포장 참조"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 - 3.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 절차
 - 4. 조직 처리에 사용된 후 남아있는 용액명
 - 5. 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이식하고 남은 조직은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내용
 - 6.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이식되어야 한다는 내용
 - 7. 처리과정이 완료되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
- 9. 삭제 < 2021. 9. 10.>
- 제15조(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)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직의 표시·기재 사항과 법 제 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에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.
- 제16조(조직의 수입승인) ①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8., 2019. 6. 12.>
 - 1.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. 이 경우 수출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(이하 "제조소"라 한다)가 두 군데 이상 인 경우에는 각 제조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수출국 제조원·제조소가 해당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조직을 처리·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)
 - 3.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4. 조직의 세부명칭 및 성상(性狀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5.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6.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·기재 사항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 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7. 수입승인 신청일 이전 최근 10년간 수출국 제조원의 해당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관련 서류
 - 8.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조직의 채취・처리・가공・저장・포장과 별표 3에 따른 조직 관리기준 중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이 경우 제조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제조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6조의2(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) ①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수입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 재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조직수입승인서(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9. 10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수입승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직수입승인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.
 - ③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수입승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조직수입승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5. 13.]

- 제17조(조직 수입의 변경승인)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직은행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조직수입승인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6. 29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수입 변경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수입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조직은행의 장에게 내주어야 한다.
 - ③ 삭제<2017. 12. 8.>
 - ④ 삭제 < 2017. 12. 8.>
 - ⑤ 삭제<2017. 12. 8.>

[제목개정 2017. 12. 8.]

- 제17조의2(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의 시설·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4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, 수출국 제조원 또는 수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알려야 한다.<신설 2019. 12. 4.>
 - 1. 수입중단 사유
 - 2. 수입중단 기간
 - 3. 수입중단 대상 조직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신설 2021. 9. 10.>

[본조신설 2017. 12. 8.]

- 제17조의3(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) 법 제17조제4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조직의 명칭(세부명칭을 포함한다) 및 성상, 조직의 보관상태, 조직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
 - 2. 수출국 제조원(제조소를 포함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
 - 3. 조직의 크기, 중량 및 치수
 - 4. 조직의 수입승인일자 및 승인문서번호(수입 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력을 포함한다)
 - 5.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 기준
 - 6.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하는 조직의 채취・처리・가공・저장・포장과 별표 3에 따른 조직 관리기준 중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
 - 7.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ㆍ기재 사항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
 - 8. 가공·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조직기증자의 연령 및 성별 등에 관한 정보, 병력 자료,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
 - 9. 가공·처리과정이 완료되어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의 품질관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이 경우 수입조직의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 - 10. 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수입 내역
 - 11. 분배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분배대상 기관이나 분배 수량

[본조신설 2017. 12. 8.]

- 제17조의4(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) ①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
 - 2.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직수입승인서 사본
 - 3. 수출국 제조원이 조직을 처리·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수출국 제조원 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)
 - ②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수출국 제조원 변경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수출국 제조원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

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4.]

- 제18조(기록의 작성·보고 및 추적조사) ① 조직은행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6. 29.>
 - ② 조직이식의료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작성하여 이식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각 조직에 대하여 기증자부터 이식을 받은 사람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,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의 결과를 조사·기록하여야 한다.
 - ④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록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시스템을 이용하여할 수 있다.
 - ⑤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직이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전염성질환이 발생한 경우
 - 2. 악성종양이 전이된 경우
 - 3. 조직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
 - ⑥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작용 외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적조사 및 기록,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9조(회수·폐기명령 등)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회수·폐기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1, 9, 10.>
 - 1. 대상 조직의 명칭
 - 2. 회수 · 폐기명령 등의 사유
 -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조직의 분배기관・분배량 및 분배일자
 - 2. 회수계획 및 회수된 조직의 폐기처리 방법 등
 - ③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마쳐야 하고, 해당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9. 10.>
 - 1. 회수・폐기 등의 조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 - 2.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
 - ④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기간 안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.<개정 2021. 9. 10.>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의 회수·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0조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- 제21조(폐업 등의 신고)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직은행 폐업 신고서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 9. 10.>
- 제21조의2(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)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감시원(이하 "인체조직감시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다.
 - 1. 인체조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2.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
 - 3. 의사, 치과의사, 간호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
 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조직감시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체조직감 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조직감시원의 효율적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체조직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4.]

- 제22조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13.>
 - 1.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: 2015년 1월 1일 1의2.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: 2016년 1월 1일
 - 2. 제6조에 따른 조직은행 변경허가 사항 등: 2015년 1월 1일
 - 3. 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: 2015년 1월 1일
 - 4. 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: 2015년 1월 1일
 - 5. 제13조에 따른 조직의 표시 및 기재사항: 2015년 1월 1일
 - 6. 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: 2015년 1월 1일
 - 7. 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: 2015년 1월 1일
 - 8. 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: 2015년 1월 1일
 - 9. 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: 2015년 1월 1일
 - 10. 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·보고: 2015년 1월 1일
 - 11. 삭제 < 2022. 7. 12.>
 - 12. 삭제 < 2022. 7. 12.>

부칙 <제1816호,2022. 7. 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